

아산시 공고 제2020- 39호

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(2차)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(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·징수)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(2차)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규정에 의거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0년 1월 7일

아 산 시 장



【공시송달 내역】

1. 제목 :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(2차)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
 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(부과·징수), 제40조(가산금 및 독촉)
 -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(송달)
3. 대 상 자 : 불임참조
4. 공고기간 : 2020. 1. 7. ~ 1. 23. (16일간)
5.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아산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(2차)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, 우체국, 전자납부, 가상계좌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 (압류의 조건)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기타사항은 아산시청 교통행정과(☎ 041-540-2731(2685) / FAX 041-540-23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